



Pentland Group plc

그룹 영업기준 정책

Group Business Standards Policies



목차

제 1항

그룹 영업행위 지침

제 2항

그룹 고용정책 기준

제 3항

공급업체 고용기준에 관한 그룹 지침

제 4항

그룹 환경정책

본 강령 목적상 '그룹'은 펜트랜드 그룹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전체 또는 과반수를 소유하고서 우리가 직접 운영 통제를 행사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펜트랜드 그룹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운영 통제를 행사하지 않는 사업과 미국에서 운영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업체가, 해당되는 경우, 이 강령을 준수하도록 우리는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제 1항

그룹 영업행위 지침

2001년 6월 18일 RSH (로버트 스티븐 지주회사) 이사회 인준

1. 취지

1. 로버트 스티븐 지주회사는 가족소유의 그룹회사입니다. 우리 그룹회사의 가치관은 가족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사업은 정직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지침의 취지는 실제행동으로 이러한 지침이 이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의 조직운영에 대한 행동기준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룹의 간부와 직원들이 외부인이나 기업과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기대하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1.2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업을 합니까?

우리는 양질의 제품, 명성, 효율성, 스타일 및 가치를 개발하고 이러한 제품을 공정한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주주의 가치를 창조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주주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범주의 선두적 브랜드와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의 비전을 현실에서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인간과 자연환경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객과 공급업체와의 파트너관계의 조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관계는 상호신뢰에 근거해야 하며 우리는 본 지침서에 천명된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운영을 하여 파트너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3 이해관계 당사자

우리의 사업행위로 인해 여러 사람들과 기업들이 영향을 받으며 우리는 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직원, 고객, 공급업체 및 기타 사업파트너(하청업체, 유통업체 및 공동투자업체 등)와 광역사회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우리회사에 투자한 주주 및 사주들에게 적절한 이익금을 배당해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1.4 본 지침의 지위 (status of this Code)

본 지침은 그룹회사의 모든 영업행위에 대한 절대적 기준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회사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본 지침에 부합해야 하며 만약위배사항이 있을 때에는 본 지침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룹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기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업행위 기준

2. 직원에 대한 원칙

2.1 직원은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회사의 지속적인 성공은 전적으로 직원의 자질과 열성에 달려있습니다.

2.2 따라서 우리는:

- 모든 직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별도의 그룹 고용기준 정책이 책정되어있음)
- 쾌적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합니다(별도의 더욱 상세한 그룹 안전 및 보건정책이 책정되어있음)
- 보다 조건이 좋은 급여와 기타 혜택을 제공합니다.
- 고용주와 직원간에 혜택과 책임이 서로 공평하게 이루어진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정한 고용조건을 제공합니다.
- 직원의 자질을 최대한 개발하여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 모든 직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능력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직원을 선발, 교육시킵니다.
-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민족적 배경, 정치이념, 성적지향, 결혼여부, 성별, 연령 또는 비상근직이나 계약직에 따라 직원이나 잠재 직원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없는 근무환경을 보장합니다.
- 업무효율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면서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직원을 관리합니다.

- 징계절차는 서류로 하며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 그룹의 변화, 목표설정 및 개발방침에 대해 직원들에게 알립니다.
- 어느 직원에게도 해당직원이 속해있는 인정된 전문기관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일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 그룹내의 어느 곳을 막론하고 본 지침에 위배되는 일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말하도록 권장합니다.
- 모든 직원은 원하는 경우 모든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또한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가 있음을 존중합니다.
- 모든 직원은 고용계약에 부합하는 한 사회활동(자선활동, 학교 운영이사, 공직선거출마 등)과 본인이 믿고있는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합니다.
- 고용보호규정, 사회안전부담 기타 정상적인 고용으로 인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유직, 임시직 등의 인력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3. 고객에 대한 원칙(Towards Customers)

3.1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고객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합니다.

3.2 따라서 우리는:

- 고객에게 가격, 품질, 성능, 스타일, 안전 및 환경보호 면에서 만족할 만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호 유익한 사업관계를 조성하고 계약상의 의무이행 내지는 그 이상의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계약서의 명확성을 기해 애매모호한 문구를 피하도록 하여 우리가 해야 할 사항과 고객이 해야 할 사항을 분명히 하도록 합니다.
- 모든 품질 또는 성능에 관련된 문제는 신속히 처리하여 고객 또는 소비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 뇌물이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영업상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영업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고객회사의 직원이나 정부관료에게도 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우리 제품의 모조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합니다.

4. 공급자에 대한 원칙

4.1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은 사업성공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요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급업체와 밀접한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4.2 우리는:

- 공급업체와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관계를 개발하도록 노력합니다.
- 공급업체와의 계약조항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부지중의 실수를 통해 이득을 취하기 보다는 계약정신에 입각하여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 계약서의 명확성을 기해 애매모호한 문구를 피하도록 하여 우리가 해야 할 사항과 공급업체가 해야 할 사항을 분명히 하도록 합니다.
- 우리 그룹의 영업행위지침 특히 고용기준, 안전, 보건 및 환경정책을 수용하여 이행하는 공급업체와 관계를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 공급업체와 명확한 지불조건을 합의하고 이와 일치하여 지불기일을 엄수하며 기술적인 핑계를 이유로 지불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 공급업체와의 거래전반에 걸쳐 정직과 성실을 강조하며 우리 그룹의 직원, 대리점 또는 이들의 가족에게 현금이나 선물을 쥐서 영업을 획득하려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영업관행을 하고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나 기업과는 거래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5. 광역사회에 대한 원칙 (Towards the Wider Community)

5.1 기업체는 기업체사회의 좋은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있습니다.

5.2 따라서 우리는:

- 우리가 영업행위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내의 제반 법률과 규정을 엄수합니다.
- 환경문제와 지구의 자연자원에 대한 역효과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합니다(별도의 그룹 환경정책이 책정되어있음).
- 우리 그룹의 합법적인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 정부나 정당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유보하지만 우리 그룹은 정당에 기부금을 내지 않으며 어떠한 정치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 직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 자선단체와 지역사회 기관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6. 기타 사항 (Other Matters)

6.1 경쟁관계

우리 그룹은 영업에 대한 최고의 적절한 환경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신봉하며 따라서 우리는:

- 우리가 영업하는 시장에서 최선을 다 하되 공정하게 경쟁합니다.
- 가격조작이나 카르텔 형성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획득하지 않습니다.
- 다른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합니다.

6.2 재정사항

우리 그룹의 모든 회원사는 정식회계절차에 따라 모든 영업거래를 공개적으로 회사장부에 서류로서 정확히 반영하며 추후에 내부 및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6.3 기밀보호

우리 그룹이 보유하고있는 직원 및 사업 파트너에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들에게만 허용되도록 하고있습니다.

6.4 이해 및 이행

- 현재의 직원 및 앞으로 고용될 직원들에게 우리 그룹의 영업행위지침과 직원들의 행동규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 우리 그룹의 모든 고위 간부들은 최소한 매년 1회 그룹이 제정한 영업행위지침의 이행정도와 모든 직원에게 본 지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 및 그 후의 적용정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 2항

그룹 고용정책 기준

2001년 6월 18일 RSH (로버트 스티븐 지주회사) 이사회 인준

1. 원칙

그룹 회원사와 그 주주들은 영업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격 및 인권에 근거하여 정직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고있습니다.

2. 정책

2.1 직원

우리 그룹 회원사에 근무하는 직원, 이들의 보건, 안전 및 직장에서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정책으로 삼고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룹이 영업하고 있는 해당국가의 모든 관련 고용법과 규정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는 그룹 영업행위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해당국가 내에서 가장 훌륭한 고용정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2 우리 제품을 생산하는 종업원

우리 제품은 대부분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수백개의 공급 업체들이 도합 수십만 명을 고용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 제품 대부분이 우리의 브랜드 이름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룹의 고용기준을 도입하여 실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자체기준을 적용하는 공급업체와만 영업하는 것을 그룹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공급하는 업체들 또한 자사의 공급 업체들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 최종적으로 생산되기까지 조금씩이라도 관련되는 수많은 종업원들의 근무환경을 우리가 모두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직접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우리의 고용정책을 채택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의 자사의 공급 업체들에게도 이러한 정책을 연쇄적으로 적용하도록 독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품이 시장에서 현재나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그룹의 품질과 기술규격에 일치하면서 전반적 생산원가가 가장 저렴한 국가에서 제조되어야 하며 이는 상당수의 제품이 임금이 비교적 저렴한

국가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룹의 공급 업체들은 우리 그룹의 기준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서 그들의 종업원을 처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그룹의 공급 업체들에게 적용할 고용기준지침을 정하여 공급 업체들이 하기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생계유지가 가능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아야 함
- 근로조건이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야 함
- 아동노동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근로자 자유의지에 의한 근로를 해야 함
-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함
- 가혹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함
- 단체결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함
- 정규근로자를 고용해야 함

이러한 지침은 윤리적 상행위 실천운동(ETI)의 기본지침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제노동기구(ILO) 관련 협약과 권장사항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3. 이행

3.1 그룹자체 직원

우리 그룹 회원사가 영업행위를 하고있는 국가의 회원사 경영진은 가능한 한 해당국의 법규와 규정에 의거하여 상기 그룹 지침을 반영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합니다. 그룹회원사의 인사관리 책임자들은 그룹 인사관리담당 이사의 기능상 통제를 받으며 그룹정책기준에 미달하는 고용사례가 있을 시에는 이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2 공급업체 직원

우리의 제품이 생산되는 많은 국가 중에는 납품업체가 해당국가의 역사, 전통, 문화와 일부의 경우 심지어 법률상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 그룹의 고용정책을 이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우리 그룹은 문제점을 피해 나가기 보다는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약 공급업체가 우리 그룹과 협력하여 개선프로그램 이행을 거부할 경우 우리는 거래관계를 단절합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들 중에는 특정국가, 지역 또는 지역사회에 국한된 특유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국가내의 다른 조직 또는 국제적 기관과 자주 협력합니다. 이러한 조직에는 우리 그룹의 영업활동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기업체들, 해당국가내의 산업조직 및 자선단체나 비정부기관(NGO)과 같은 해당국가내의 복지기관과 국제복지기관이 포함됩니다. 특히 우리 그룹은 세계전역에 걸친 공급망 업체들의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결성된 기업체, 비정부기관 및 국제노동조합조직의 연합체인 윤리적 상행위 실천운동기구(ETI)의 회원사입니다.

각 그룹회원사는 자사의 공급업체에 관련된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해 나갑니다. 소수인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통제 팀인 그룹 영업기준부서는 자문,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며 그룹전반에 걸친 프로그램 조정을 지원하고 다른 조직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주선합니다. 이 부서는 또한 그룹회원사의 실행상황을 점검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제 3항

공급업체 고용기준에 관한 그룹 지침

2001년 6월 18일 RSH (로버트 스티븐 지주회사) 이사회 인준

본 지침은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가능한 한 이보다 더 좋아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해당국가의 법규와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이러한 법규정과 본 지침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1. 생계유지가 가능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1.1 평균 주당 임금과 수당은 해당국가의 법정 최저임금 또는 업계 표준임금 수준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양자 중 높은 쪽을 따라야 합니다. 어느 경우이든 임금은 기본 생활을 충족시키고 약간의 여유가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 1.2 고용계약을 하기 전에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의 산출기준과 임금에서 공제될 금액에 관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의 해당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1.3 징계조치로서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되며 법정공제금이 아닌 한 해당근로자의 명확한 서면동의 없이 다른 사유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아야 함

- 2.1 근로시간은 해당국가의 법규 또는 업계 표준에 따라야 하며 또는 양자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는 어떤 경우이든 정기적으로 주당 48시간 이상 근무해서는 안됩니다.
- 2.2 시간외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기적으로 요구해서는 안되고 언제나 정규임금 이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2.3 근로자는 주당 평균 최소 하루를 쉴 수 있어야 합니다.

3. 근로조건이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야 함

- 3.1 작업에 따르는 특정 위험요소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근로환경의 위험요인을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서 업무관련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건강에 대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3.2 고용하는 즉시 그리고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업무가 바뀌는 경우 새로운 업무에 따르는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 3.3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 시설과 음료수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음식저장을 위한 위생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3.4 기숙사가 제공되는 경우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고 근로자들의 기본필요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 3.5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은 고위 간부가 맡도록 해야 합니다.

4. 아동노동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4.1 아동을 노동자로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 4.2 공급업체가 속해있는 업계와 지역사회에 아동노동이 고용되고있는 사례가 발견되면 공급업체는 고용되어있는 아동들이 아동연령을 벗어나는 시점까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착수하거나 참여해야 합니다.
- 4.3 18세 이하의 근로자는 야간작업이나 위험한 업무를 해서는 안됩니다.
- 4.4 본 지침에서 “아동”이라 함은 해당국의 법정 의무교육 연령이나 최저 근로연령이 더 높은 경우에는 그 연령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16세 이하를 의미하며 “아동노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연령협약 1973(C138)에 부합하지 않는 한 아동 또는 청소년이 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5. 근로자 자유의지에 의한 근로를 해야 함

- 5.1 강제, 노예 또는 타의에 의한 노동은 안됩니다.
- 5.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보증금, 신분증 또는 기타 형식의 보증을 맡기도록 요구해서는 안되며 근로자는 일정기간의 사전통지를 한 후 직장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6.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함

6.1 고용, 임금, 교육기회, 승진, 해고 및 정년퇴직 등에 있어서 인종, 사회계급, 원래국적, 종교, 연령, 지체부자유, 성별, 성적지향, 결혼여부, 노조가입 여부, 특정정당 지지여부 등 업무수행능력과 관계없는 사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7. 가혹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함

7.1 신체적 가혹행위나 징계, 언어폭행, 신체적 가혹행위 협박, 성희롱 및 기타 형태의 위협은 허용되지 않으며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8. 단체 결사 및 집단협상권리의 존중

8.1 모든 근로자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여 집단협상할 수도 있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8.2 공급업체는 노조활동과 직원모집에 대해 개방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8.3 노조간부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하며 노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작업장의 출입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8.4 단체결사 및 집단협상권리가 법으로 제약되어있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결사하며 협상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9. 정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함

9.1 해당국의 법규와 관행에 근거하여 가능한 한 정규 근로자를 고용해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9.2 공급업체는 해당국의 노동 및 사회안전 법규나 규정에 정해진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기술을 전수하거나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사가 없이 일용직 계약, 하청계약, 재택노동, 견습공 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규직을 대체해서는 안됩니다.

제 4항

그룹 환경정책

2000년 11월 11일 RSH (로버트 스티븐 지주회사) 이사회 인준

1. 취지

로버트 스티븐 지주회사와 펜트랜드 그룹을 포함한 모든 자회사는 환경문제는 세계수준의 표준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하여 우리 그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우리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여러 방면으로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고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그룹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근로자와 일반대중의 안전 및 보건을 도모하는 한편 환경과 지구의 자연자원에 대한 역효과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우리 그룹은:

- **관련법규를 준수하거나 그 이상의 노력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경우 우리그룹의 환경 및 윤리기준에 부합하는 자체기준을 세울 것입니다.
- 우리 그룹의 환경관리 시스템 (EMS) 을 감시, 통제 및 재검토하고 필요 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일련의 절차를 개발, 이행할 것입니다.**
- 공급업체가 건전하게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정책을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지원, 교육 및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공급 업체들이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 근로자들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제안하도록 권장하고 가능한 한 이를 수용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 더욱 적절한 원자재와 생산공정을 개발하여 환경문제를 의식하면서 우리 제품을 **설계, 생산하도록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제품생산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정책과 성과를 외부와 광범위하게 논의하며 적절한 경우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한 기술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전수할 것입니다.
- 우리제품의 최종소비자에게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제품을 사용, 처리 및 패키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홍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우리가 영업하는 지역에서의 지역사회활동을 지원하면서 우리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환경파손이 되지 않도록 지역 및 광역사회를 보전할 것입니다.



Pentland Group plc

Lakeside

Squires Lane

London N3 2QL

England

전화: +44 (0)20 8346 2600

팩스: +44 (0)20 8346 2700

www.pentland.com

전자우편: groupbusinessstandards@pentland.com

펜트랜드 그룹은 윤리적 상거래 이니셔티브 창설 멤버, 국제 사업 지도자 포럼 멤버, 유엔 글로벌 콤팩트 가맹사입니다.

© Pentland Group plc 2007